

#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148-1
----------	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9월 10일

제안자 : 박선미 의원

## 1. 수정이유

- 수탁자 선정 절차와 회관 운영 계획의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회관 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(제5조제3항)
- 나.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·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을 신설(제8조제5호)

## 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보다 전문적이고”를 “전문적이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수탁자 선정은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, 그 밖의 위탁 관련 사항은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·결산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          안	개   정   안
<p>제5조(회관의 운영·관리) ①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하남시장이 한다. 다만, 회관의 <u>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   략)</p> <p>③ <u>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5조(회관의 운영·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<u>전문적이고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수탁자 선정은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, 그 밖의 위탁 관련 사항은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
<p>제8조(수탁자의 의무)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5. (생   략)</p>	<p>제8조(수탁자의 의무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·결산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